

< 붙임 1 >

#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시행지침

2014. 7

한국금형산업진흥회

## (1) 국내외전시회 참가 지원

제1조(목적) 해외 금형관련 유망전시회에 기업의 제품을 진열, 전시하여 신기술·신제품의 정보교류, 판매촉진 및 홍보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대상) 권역 내 금형 및 금형관련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.

제3조(지원기준) 국내외전시회(이하 “전시회”라 한다)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.

1. 기업당 참가지원 기준 및 지원내용

가. 국내 : 1개 기업당 1부스(9m<sup>2</sup>) 배정

구 분	지원내용 및 횟수
국내전시회	· 공동부스 · 연 3회 이내

나. 국외 : 1개 기업당 1부스(9m<sup>2</sup>) 배정

※ 참가지원 기준 항목은 행사 내용 및 상황에 따라 일반적인 기준 외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

구 분	지원내용 및 횟수
국외전시회	· 공동부스 · 통역비 · 물류비용(왕복) · 현지 차량지원 · 행사운영비 · 연 3회 이내

제4조(지원방법 및 절차)

1. 참가 전시회 정보의 사전 공지 후 참가기업을 공개모집하되, 전시참가 선정기준표\*에 한하여 정한다.
2. 전시 참가를 위한 각종 업무(참가신청, 전시품 수집 및 운송, 디렉토리 게재, 부대시설 신청 등)를 지원한다.

제5조(해외마케팅 수수료)

1. 국내외 전시회를 통한 계약체결 건에 대한 수수료 : 총 계약액의 1%
2. 수수료 납부 종속기한 :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까지
3. 수수료 부과 대상 항목 : 일체의 수주 건

\* 별표1 전시 참가 선정기준표 참고

## (2) 해외바이어초청수출상담 지원사업

제1조(목적) 금형 기업이 해외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여 기업 기술수준 및 여건 등을 홍보함을 지원하여 수출촉진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대상) 권역 내 금형 및 금형관련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.

제3조(지원범위 및 항목) 해외바이어를 초청함에 있어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한다.

### 1. 지원범위

- 가. 인 원 : 1사2인 이내
- 나. 지원범위 및 초청횟수

지원회차	지원내용
1~4	· 100%
5	· 70%
6	· 50%
7	· 30%

### 2. 지원항목

- 가. 국제선 항공료 왕복 100%
- 나. 숙박비(5일 이내)
- 다. 국내이동경비

### 제4조(지원절차 및 방법)

1. 해외바이어초청 사업 세부지침서에 따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, 기업은 매진 진흥회에 사전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내용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2. 진흥회는 사전 승인된 해외바이어초청에 대해 행사 종료 후 관련 증빙자료를 기업으로부터 제출받고 지원금을 사후 지급한다.

### 제5조(해외마케팅 수수료)

1.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을 통한 계약체결 건에 대한 수수료 : 총 계약액의 1%
2. 수수료 납부 종속기한 :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까지
3. 수수료 부과 대상 항목 : 일체의 수주 건

별표1. 전시참가 선정 기준표

구 분	배 점	평 가 내 용	점 수	
해외마케팅 전담인력 보유	50	○ 실무경력 ○ 수주실적	보유	50
			대체인력 有	30
			미보유	10
수출 잠재력	30	○ 전시품 국제경쟁력	상	30
			중	20
			하	10
참가 횟수	20	○ 최근 1년간 진흥회 해외전문 전시회 참가 횟수	없음	20
			1회 이상	10
합계	100	※ 60점 이상 획득한 기업에 한해 참가		